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47

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·사기업체 및 공·사단체를 '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'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있도록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,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 실시기관 (이하 "취업지원실시기관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전단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21조의3제1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상응한"을 "상응하는"으로,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"을 "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(이하 제21조의5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21조의3제3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21조의4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5(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 지원실시기관(이하 "우수취업지원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 - 2.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⑦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기관의 선정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1조의6(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및 우선고용 의무(이하 "채용·우선고용의무"라 한다)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이 각각 제21조제1항전단에 따른 채용비율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우선고용비율에 현저히미달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각각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각각 "취업지원 실시기관"으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"을 "취업지원실시기관"으로 한다.

법률 제2028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80조의2제1항제5호 중 "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"을 "취업지 원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8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에 관한 확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채용・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6
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・우선고용의무를 위반하는
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20조(취업지원 실시기관) 취업 제20조(취업지원 실시기관) ----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 ----- 취업지원 실시기 관(이하 "취업지원실시기관"이 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라 한다)----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) 제21조(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) ①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 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 업지원실시기관-----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군무원(이하 "일 반직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임 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 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 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 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(이하 "채용비율"이라 한 다)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직공무 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 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 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21조의3(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적의무 등) 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한다.
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고용비율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.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<u>지정·고시된</u> 공공기관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21조의3(기업체 등의 우선고용
의무 등) ①
취업지원실시기관

②
<u>상응하는</u>
취업지원실시
기관
1
<u>지정·고시된</u>
공공기관(이하 제21조의5에서

-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제20조제2호에 해당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
- ③ 제20조제3호에 해당하는 <u>취</u> 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 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 인 사립학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 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.
- 제21조의4(경력기간의 합산) 제20 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(이하 "업체 등"이라 한다)은 우선고용한 취 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(號俸劃定)을 위한 경 력기간에 합산(合算)할 수 있다. <신 설>

<u> "공공기관"이라 한나)</u>
2. (현행과 같음)
3
취업지원실시기관
③
업지원실시기관
<u>.</u>
제21조의4(경력기간의 합산)
취업지원실시기관
제21조의5(고용 우수 취업지원실
시기관의 선정 등) ① 국가보훈
부장관은 제20조제2호에 해당
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취업

지원 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공·사기업체 또는 공·사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 기관(이하 "우수취업지원기관" 이라 한다)으로 선정할 수 있다.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장은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수취업지원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.
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 지원기관을 우대하기 위하여 관 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.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우수취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2.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 기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신 설>

-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취업지원기관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 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우수취업지원 기관의 선정 기준·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6(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) ① 국가보훈부장 관은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 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취업지 원 대상자 채용 및 우선고용 의 무(이하 "채용·우선고용의무" 라 한다) 이행 실태를 매년 국 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·우선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 또는 우선고용비율이 각각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채용 비율 또는 제21조의3에 따른 우

제24조(채용시험의 가점) ① 취업 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 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(加點)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24조의2(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) ① (생 략)
 - 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,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(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

선고용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
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해서는
그 의무 위반 정도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
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 및
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4조(채용시험의 가점) ① <u>취업</u>
지원실시기관
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2(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
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

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 함시켜야 한다.

-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, 제21조의3, 제22조 또는 제24조 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 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 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21조제1항,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 · 2급 · 3급 · 4급 또는 5급의 상 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 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 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.

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 업자(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직급 의 부여・보직(補職)・승진・승 급(昇級) 등 모든 처우에서 채

	취업지원
<u>실시기관</u>	
③	
	취업지원
<u>실시기관</u>	
<u><삭 제></u>	

제27조(차별대우 금지) ① 취업지 | 제27조(차별대우 금지) ① 취업지 원실시기관-----

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 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취업 사실 등의 통보) <u>취</u> 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 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법률 제2028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

제80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

② 취업지원실
시기관
③
취업지원실시기관
<u>.</u>
제28조(취업 사실 등의 통보) 취
 업지원실시기관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283호 특수임무유공자
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
부개정법률
제80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①

항, 재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제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 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 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 대 확인에 관한 사무 <신 설>
- 6. ~ 13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_
5
5 <u>취업지원실시기관</u>
취업지원실시기관
취업지원실시기관
취업지원실시기관 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-
취업지원실시기관 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